

본품은 세 기능을 모두 갖추고 있으나, **어느 하나가 나머지를 중속시킬 만큼 우월하다고 볼 자료가 없음**. 통신 기능은 측정값을 내보내기 위한 수단이고, 계수 기능과 측정 기능은 같은 센서군에서 나옴. 따라서 제90류 주 제3호를 거쳐 적용되는 제16부 주 제3호의 **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**에 해당함. 주기능을 정할 수 없으므로 통칙 제3호 나목의 **"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"**도 특정할 수 없음.

통칙 제3호 다목 — "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**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**로 분류한다." **소스**

○ 넷째 — 결론

따라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**통칙 제1호 · 제3호 다목 및 제6호**의 규정에 의거, 경합하는 제8517호 · 제9029호 · 제9031호 중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인 **제9031.80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검토됨**.

참고 미국 세관(CBP) 사전심사 **N340510**(2024-06-10)은 동종 물품을 제9031.80호로 분류하였고, 결정문은 **"어느 구성요소도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(no one component imparts the essential character) ... 번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"**라고 밝히며 GRI 3(c)를 적용함 **2차**. 인도 관세당국 사전심사에 서도 같은 호로 분류된 사례가 확인됨 **2차** (결정 번호 원문 **미확인**).

해외 결정은 참고자료이며 국내 10자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함. 사양이 다르면 해당 결정은 적용되지 않음.

■ 자료 점검

받은 것 — 품명뿐.

웹에서 채운 것 — 기능(심박·걸음수·가속도계·무선전송), 해외 사전심사 결과.

끝내 **[미확인]**인 것 — 재질, 치수, 중량, 충전지 용량, 통신 규격과 주파수, 표시장치 유무.

■ 확실도 — 중간

경합 호의 판단 구조는 해설서 원문으로 확인되나, **재질과 통신 규격이 확인되지 않아** 제8517호 해당 여부가 뒤집힐 여지가 남음. **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을 권장함**.

■ 화주에게 확인할 것

- 외장과 내장 부품의 재질 — 귀금속이 쓰였다면 제71류(신변장식용품) 해당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.
- 통신 규격과 주파수 — 전파법상 적합성평가 대상 여부가 갈립니다.
- 본품에 표시장치(화면)가 있는지 — 있으면 기능 비중 판단이 달라집니다.
- 측정값을 본품이 자체 저장·연산하는지, 휴대전화로 보내기만 하는지 — 측정기기로 볼지 송수신기기로 볼지의 갈림길입니다.
- 의료기기 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지 — 받았다면 제9018호(의료용 기기) 해당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.

■ 근거 없이 쓴 문장

없음.

본 의견서는 AI를 보조 도구로 활용하여 작성된 초안으로, 담당 관세사 최종 검토 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.

관세청 품목분류 결정이 아니며, 확정 분류는 관세율표 정보와 관세청 품목분류 결정에 따릅니다.

견본을 볼 때 짚을 것 셋.

- 검토사유의 네 단락 순서 — 주(註) → 호 용어와 해설서 → 본품의 경우 → 따라서. 관세청이 실제로 쓰는 순서입니다. 이 순서를 지침에 박아두면 AI가 그 문체로 씁니다.
- [미확인]**이 지워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재질·치수를 모르는데 그럴듯하게 채웠다면 그게 지어낸 것입니다.
- 「근거 없이 쓴 문장」 칸이 "없음"입니다**. 견본이라 비어 있지만, 실제 답변에서는 여기가 채워져 나오는 일이 있습니다. **채워져 나오면 지침이 제대로 도는 것이니** 그 문장부터 보십시오.